KOSHA GUIDE

C - 91 - 2015

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.

- (바) "준불연재료"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그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.
- (사) "난연재료"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그 성 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.
- (아) "소화설비"라 함은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· 기구 또는 설비로서, 소화기구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 등소화설비, 옥외소화전설비를 말한다.
- (자) "소화기구"라 함은 소화기, 자동소화장치(주방용 자동소화장치,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, 가스자동소화장치, 분말자동소화장치, 고체에어로졸자동소 화장치, 자동확산소화장치), 간이소화용구를 발한다.
- (차) "소화기구의 능력단위"라 함은 국민안전처 고시「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」에서 정한 소화능력시험에 따라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정한 것을 말한다.
- (카) "폭발성·인화성·산화성·가연성 등 위험물질"이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」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

(1)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(안전· 보건 관리체제)에 따라 구성된 안전·보건활동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하고 이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